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미국 교육부 34 C.F.R. § 106.45에 의거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

목차

- I절: 소개
- II절: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
- III절: 차별 금지 및 공평한 대우
- IV절: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방침
 - A. 정식 고소
 - B. Title IX 코디네이터 초기 책임
 - C. 혐의 통지
 - D. 조사 절차
 - E. 판결
 - F. 항소
 - G. 비공식적 해결
- V절: 보복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미국 교육부 34 C.F.R. § 106.45에 의거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

I. 소개

미국 교육부 요건에 따른 신규 Title IX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이 고충 처리 절차는 특정 유형의 성적 위법 행위를 정의된 절차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는 아래 II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Title IX 규정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용문을 포함합니다. 34 C.F.R. 파트 106을 참조하십시오.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다섯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I절은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새로운 Title IX 규정에 따라 성적 괴롭힘(성적 위법 행위의 일부)은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조사되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Title IX 규정은 성적 괴롭힘에 대해 협소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풀턴 카운티 교육구(FCS)는 성차별, 위법 행위, 괴롭힘이 없는 교육 환경 제공에 계속 전념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미국 교육부에 의해 정의된 성적 괴롭힘의 정도에 미치지 않거나 Title IX의 관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성적 위법 행위 역시 풀턴 교육 위원회 정책에 따라 조사 및 검토될 것입니다.

III절은 차별 금지 및 공평한 대우에 관한 FCS 방침을 강조하고 있으며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평한 대우의 개념에는 지원 조치 제공과 고충 처리 절차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IV절은 Title IX의 잠재적 위반 사건 발생시 해당 규정의 요건에 따른 FCS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운영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절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식 고소 제기, 조사 절차,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역할, Title IX의 의사결정 절차, 항소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학생, 교직원, 사무직원은 이 절을 참고하여 Title IX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 성적 괴롭힘 혐의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FCS가 사용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V절은 FCS가 Title IX 절차에 관여된 당사자에 대해 보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미국 교육부(USDOE)에 의해 지시된 바와 같이 FCS 학생과 직원을 위하여 성적 위법 행위를 정의하고 대처하며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FCS는 교직원, 사무직원, 학생이 성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풀턴 교육 위원회 정책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식 고충 처리 절차는 학생, 교직원, 사무직원을 포함하여 FCS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II.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USDOE 34 C.F.R. § 106.44(a) 규정에 따라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F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안의 '성적 괴롭힘'에만 적용되며, 미국 내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A. 정의 요건

'성적 괴롭힘'은 규정(34 C.F.R § 106.30)에서 다음 사항에 하나 이상 충족되는 성에 기반한 행위로써 정의됩니다. :

1. 원치않는 성적 행위에 개인이 가담하는데 도움, 이익 또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 FCS 직원;
2.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 심각하고, 중용을 하고,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원치않는 행위로 F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개인의 균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행위 또는,
3. 성폭행,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또는 스토킹
 - A. '성폭행'은 20 U.S.C. § 1092(f)(6)(A)(v).¹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정의를 가집니다.
 - B. '데이트 폭력'은 34 U.S.C. § 12291(A)(10).²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정의를 가집니다.
 - C. '가정 폭력'은 34 U.S.C. § 12291(a)(8).³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정의를 가집니다.
 - D. '스토킹' 34 U.S.C. § 12291(a)(30).⁴에 포함된 것과 같은 정의를 가집니다.

'성적 위법 행위'는 더 광범위한 용어로 USDOE의 '성적 괴롭힘' 정의를 넘어서는 성 기반 행위를 포함합니다.

¹ 20 U.S.C. § 1092(f)(6)(A)(v)에서는 '성폭력'을 '연방 수사국의 통일된 신고 시스템하에서 강압적이거나 비강압적인 성범죄로 분류된 범죄'로 정의합니다.

² 34 U.S.C. § 12291(a)(10)은 '데이트 폭력'을 '피해자와 연애 또는 친밀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행사한 폭력이며, 이러한 관계가 관계 유지 기간, 관계 유형, 관계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로 결정이 되는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³ 34 U.S.C. § 12291(a)(8)에서는 '가정 폭력'을 '피해자의 현재나 이전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나, 피해자와 아이를 공동 육아하는 사람, 피해자와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했던 사람, 가정 또는 가족 폭력 관할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며 피해자와 유사 배우자 관계에 놓인 사람, 또는 성인이나 미성년 피해자가 가정 또는 가족 폭력 관할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행동을 행사한 그 외의 사람에 의한 중범죄 또는 경범죄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⁴ 34 U.S.C. § 12291(a)(30)은 '스토킹'을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상당한 감정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특정 사람을 겨냥한 일련의 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USDOE의 정의 요건 충족 미달의 성적 위법 행위 발생 혐의가 제기되면, 이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아닌 해당 풀턴 교육 위원회 정책으로 다루질 것입니다.

B. 관할 요건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는 FCS가 성적 괴롭힘이 발생한 전후 관계와 피고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 행사, 장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FCS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 조직이 관리하거나 소유한 건물도 이에 포함됩니다. 국제 견학 여행 같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은 규정에 따라 배제됩니다. (34 C.F.R § 106.44(a).)

교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되는 학교 외 행동 같이 USDOE의 관할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성적 위법 행위가 일어났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이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아닌 풀턴 교육 위원회의 해당 기타 정책으로 다루질 것입니다.

C. 기타 정의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가 공식 고충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원고는 Title IX에 따라 성적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입니다. 피고는 Title IX에 따라 성적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라고 신고된 개인입니다. (34 C.F.R § 106.30.)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내에서 사용되는 다른 용어의 예로는 '지원 조치' 및 '정식 고소'가 있으며 아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III. 차별 금지 및 공평한 대우 방침

차별 금지 방침

FCS는 Title IX 요건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요건에는 입학과 고용도 포함됩니다. 1972년 교육 개혁법 Title IX의 요건에 따라서 FCS는 고용 결정, 입학 결정,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합법적인 차별, 괴롭힘, 보복을 금합니다.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학생, 교직원, 사무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FCS 공동체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FCS는 Title IX 코디네이터를 통해 Title IX 를 시행시키는 FCS 공동체 구성원이 제기한 또는 구성원이 대상인 신고 및/또는 고소를 접수, 조사하고 심문하며 해결할 관할권과 권한을 가집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는 Title IX 고소 및 보고서의 보고, 조사, 해결에 관한 특정 지침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행할 궁극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

학생 징계 학생 사안 책임자 Jose Mena, Title IX 코디네이터

전화: 470-254-0480

menaj@fultonschools.org

6201 Powers Ferry Road NW, Atlanta, GA 30339

내무 직원 사안 총책임자 Title IX 코디네이터 Jim Yerich

전화: 470-254-6808

yerichj@fultonschools.org

6201 Powers Ferry Road NW, Atlanta, GA 30339

B. 공평한 대우

- i. USDOE 규정 요건에 의거한 FCS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1] 원고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2] 피고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하거나 지원 조치가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 106.45를 준수하는 고충 처리 절차를 따라 피고와 원고를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34 C.F.R § 106.44(a); 106.45(b)(1)(i).)

또한, 지원 조치는 피고 및 성적 위법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FCS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 ii. 34 C.F.R § 106.30에 따라 '지원 조치'는 '원고 또는 피고가 비용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온당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하게 제공되는 '비징계적이면서 비차별적인 개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정식 고소 제기 전이나 이후 또는 정식 고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에도 요청거나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학교]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회복 또는 보존하도록 설계된 이러한 조치에는 모든 당사자의 안전이나 [학교] 교육 환경을 보호하거나 또는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지원 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는: 상담, 마감 시간 연장이나 기타 수업 관련 조정, 숙제나 수업 일정 변경, 교내 에스코트 서비스, 당사자 간 상호 접촉 제한, 원고나 피고 학생의 결석 허가, 교내 특정 지역의 보안 및 감시 강화와 기타 비슷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FCS는 추가 및/또는 다른 지원 조치를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FCS의 지원 조치 제공 능력을 손상하지 않을 범위 안에서 원고 또는 피고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 조치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가 효과적인 지원 조치의 이행을 담당합니다.

- iii. 피고로서의 개인 신분이 고충 처리 기간동안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가 끝나고 책임에 관한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피고는 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추정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원고, 피고 또는 증인으로서의 개인의 신분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4 C.F.R § 106.45(b)(1)(ii-iv).)
- iv. IV절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제기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판결된 후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원고에게 구제 방안을 제공합니다. 구제 방안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회복 또는 보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구제 방안은 지원 조치와 같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안은 징계 및 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고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4 C.F.R § 106.45(b)(1)(i).)
- v. 고충 처리 절차에서 원고나 피고 개인 또는 피고들이나 원고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결정권자 또는 그 외의 사람 사이에서는 총체적으로 이해 상충 관계나 편향성이 없어야 합니다. FCS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자료가 사용될 것이며, 이는 공정한 조사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식 고소의 판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 C.F.R § 106.45(b)(1)(iii).)

IV. 공식 고충 처리 절차

A. 정식 고소

- i. 정식 고소장이 제출되고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이를 접수하면, 이때부터 서술된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시행됩니다.

Title IX 규정에서는 정식 고소를 '[Title IX 규정에 따라 정의된] 성적 괴롭힘 혐의를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그리고 이 성적 괴롭힘 혐의를 [학교]가 조사하기를 요청하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서명한 서류'로 정의합니다.

정식 고소가 제기되는 시점에 '원고는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시도중'이어야 합니다. 정식 고소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고소는 반드시 원고의 물리적 또는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원고가 작성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34 C.F.R § 106.30.)

- ii. 고충 처리 절차 범위에 들어가는(즉, Title IX 규정의 관할 요건과 '성적 괴롭힘'의 정의(II절 참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성적 위법 행위 혐의가 FCS에 통지되나 정식 고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Title IX 규정에 따라 FCS는 피고에 대해 '징벌적 제재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 조치는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34 C.F.R. § 106.44(a); 34 C.F.R. § 106.45(b)(1)(i); 34 C.F.R. § 106.8(c)** 또한 참고하십시오. 정식 고소의 목적은 피고의 성적 괴롭힘 혐의를 학교가 조사해야 한다는 원고(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의 확신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USDOE**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CS**는 이 문서에 서술된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원고가 정식 고소를 제기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FCS** 직원은 성 학대를 포함하는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충 처리 절차의 관할 및 정의 요건 범위 내에 해당되는 성적 괴롭힘을 인지하게 되는 **FCS** 직원은 누구나 이를 적합한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행위가 규정의 정의 및 관할 요건에 충족된다면, **FCS**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거나 비공식이나 조기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 또는 제재 조치를 공표하기 전에, 법에 따라 정식 고소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 iii. 정식 고소를 제기한 후 원고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정식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A.iv** 하위 절에 따라 고소 취하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기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의 기각에 관한 사항은 아래 하위 절 **D.v.** 를 또한 참조하십시오.)
- iv. **Title IX** 하에서 실제 알고 있는 성적 위법 행위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다는 학교의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여기에 서술된 공식 고충 고소장에 서명한다고 해서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원고 또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4 C.F.R § 106.30.**)
- v.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FCS**가 동일한 사실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식 고소를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는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1. 한 명 이상의 원고 또는 피고가 있는 경우.
 2.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한 경우. (**34 C.F.R § 106.45(b)(4).**)
- vi. 필수 기각(**34 C.F.R § 106.45(b)(3)(i, iii).**)
 1. 정식 고소가 제기된다면 **FCS**는 반드시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2. 혐의 행위가 **34 C.F.R § § 106.30**에 따른 ‘성적 괴롭힘’에 대한 II절의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범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FCS**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정식 고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는 해당 다른 정책 및 절차에 의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3. 이 경우 FCS는 즉각적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동시에 정식 고소의 기각 사실, 기각 사유, 그리고 해당 고소가 기타 해당 정책 또는 절차에 의하여 검토될 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B. Title IX 코디네이터 초기 책임

- i. 혐의가 제기된 성적 위법 행위의 보고서를 받는 즉시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곧바로 원고에서 연락하여 지원 조치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식 고소 관련 절차를 설명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원고에게 정식 고소 제기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조치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원 조치에 관한 원고의 원하는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34 C.F.R §106.44(a).)
- ii. 지원 조치는 평가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혐의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기타 **FCS**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치와 관한 사항은 **III.B.ii.절**을 참조하십시오.
- iii. **IX** 코디네이터가 제한적인 초기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1. **34 C.F.R § 106.30** '성적 괴롭힘'에 대한 **II**절의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범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2. 원고가 정식 고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학교의 **Title IX** 의무에 의해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정식 고소에 '서명'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 다른 제한적인 목적으로.
정식 고소가 제출되었거나 서명된 *상황이라면*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바로 아래의 통지 조항과 아래에 서술된 더 철두철미한 조사 절차(초기 조사와 어느 정도 겹치더라도)를 포함하여 공식 고충 처리 절차 조건을 이행할 것입니다.
- iv.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의거해서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비상시에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피고를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개별적 안전 및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성적 괴롭힘 혐의로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의 신체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 때문에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고에게는 통보와 함께 제외 결정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34 C.F.R § 106.44(c).)
- v.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의거해서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 계류중인 학생이 아닌 피고 직원을 휴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34 C.F.R § 106.44(d).)

C. 혐의 통지(106.45(b)(2))

- i. 정식 고소 접수와 함께 학교의 통지 요건이 시행됩니다. 정식 고소가 제기된 후 **FCS**가 알려진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서면 통지 내용을 제공합니다:

1. 본 문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통지.
2. 34 C.F.R § 106.30의 정의대로 성적 괴롭힘으로 잠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혐의에 대해 그 당시 알려진 충분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통지. Title IX 규정에서 정의된 충분한 세부 정보에 포함되는 대상:
 - a. 해당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신원 (알려진 경우).
 - b. 34 C.F.R에 따라 성적 괴롭힘으로 여겨지는 혐의의 행위.
그리고
 - c. 혐의가 제기된 사건의 날짜 및 장소 (알려진 경우).
3. Title IX 규정에 따라 서면 통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a. 혐의가 제기된 행위에 대해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추정합니다.
 - b. 책임에 관한 결정은 고충 처리 절차의 판단에 따릅니다.
 - c. 당사자들은 자비로 자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인은 변호사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d. 해당 당사자들은 증거를 자세히 살피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 해당 당사자들이 고충 처리 절차 동안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초기 조사 면담 전에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통지는 반드시 가능한 최대로 빨리 제공되어야 합니다.

ii. 조사 중 언제라도 FCS가 원래의 통지에 포함되지 않는 혐의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혐의에 대한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D. 조사 절차

- i. Title IX 코디네이터가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혐의를 조사할 조사관을 임명합니다. 조사에는 원고, 피고, 증인과의 면담, 상황에 따라 범집행 조사 서류 검토, 관련 학생이나 고용 파일 검토, 다른 관련 서류, 소셜 미디어 및 증거 수집 및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모든 관련 정보 및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합니다. 증거 수집은 조사관의 책임이나, 당사자들이 조사관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확인해서 조사 동안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vii.1절 아래에 서술된 바와 같이 조사 절차 중에 확보한 증거와 아래 E.vii.2 절에 있는 질문을 서면으로 주고 받으며 수집하는 증거는 모두 참작될 것이나, 결정권자는 본인의 재량으로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 이전에 제시하지 않았었던 서면 질의를 주고 받으며 접하게 된 막바지 정보 또는 증거에는 중요도를 더 낮게 둘 수 있습니다.

조사 파일에는 혐의 위법 행위에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사 중에 수집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쟁점이 되는 사실과 명백히 무관하거나 연관이 없지 않은 이상 조사관은 증거를 거르거나 배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증거의 신빙성이나 중요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후 조사관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간결하게 서술하는 조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조사관은 Title IX 위반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나 잠재적 제재에 대해 그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습니다.

ii. 증거 고려 사항

1.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식 고소 혐의를 조사하면서 조사관은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관련 증거는 항쟁 혐의를 더욱 또는 덜한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입니다(유죄 및 무죄 증명 증거 모두). (34 C.F.R § 106.45(b)(1)(ii).)

2. 증거 기준

- a. 성적 괴롭힘 혐의 평가 및 공식 고충 처리 절차 시행에 있어서 FCS는 우세한 증거 기준을 활용합니다. (34 C.F.R § 106.45(b)(1)(vii).) '우세한' 기준은 혐의가 제기된 성적 위법 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b. 해당 기준은 학생 또는 직원에게 제기된 모든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식 고소에 적용됩니다. (34 C.F.R § 106.45(b)(1)(vii).)

iii. Title IX 규정 34 C.F.R. § 106.45(b)(5)에 지시된 대로 고충 처리 절차 동안 정식 고소를 조사할 때 FCS는:

- 1. 책임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증거 수집 책임과 입증 책임은 당사자들이 아닌 FCS의 몫으로 여깁니다. (34 C.F.R § 106.45(b)(5)(i).) 이는 FCS의 결정권자가 우세한 기준을 따름을 의미합니다. 위의 D.i. 하위절도 참조하십시오.
- 2. 해당 당사자들에게 증인을 세우고 기타 관련 증거를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4 C.F.R § 106.45(b)(5)(ii).)
- 3. 각 당사자가 조사 중인 혐의를 논의하거나 관련 증거를 모으고 제시하는 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4 C.F.R § 106.45(b)(5)(iii).)
 - a. 하지만, FCS는 당사자들이 성적 위법 행위 혐의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다른 당사자에 대한 기밀성을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 b. FCS 조사 중에 당사자가 혐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Title IX 규정 및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는 학교의 성적 위법 행위 처리 절차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대해 당사자가 보복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 V절을 참조하십시오.

- c. FERPA(가족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법)의 기밀 정보 재공개 금지 규정은 이 공식 고충 처리 절차 중 어떤 조사나 소송 절차에 참여한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기밀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명시적 동의없이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법정 밖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기밀 정보에만 적용되며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공식 고충 처리 절차 조사 밖이나 소송 절차 밖에서 알게 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당사자의 비용으로 선정한 자문인과 모든 관련 상담이나 절차에 동행할 기회를 포함하여, 고충 절차 전반에 걸쳐서 기타 인물들과 동석할 기회를 각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자문인은 변호사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FCS가 상담 또는 고충 절차에 있어서 각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자문인의 선택여부나 동석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FCS는 자문인의 고충 절차 참여는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양쪽 당사자의 자문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34 C.F.R § 106.45(b)(5)(iv).)
 - a. 자문인이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문인은 오로지 당사자에게 조언하거나 당사자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 조사관, 재판관, 다른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5.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요청받은 각 조사의 회의 날짜, 시간, 장소, 참여자, 목적 내용을 포함한 서면 통지가 달력 날짜로 3일 전에 각 당사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통지는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4 C.F.R § 106.45(b)(5)(v).)
 - 6. 정식 고소에서 제기된 혐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확보된 증거가 당사자이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것인가에 상관없이 FCS가 확보한 모든 증거는 조사의 일부로써, 양쪽 당사자에게 증거를 자세히 살피고 검토할 동등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증거 제공의 목적은 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각 당사자가 증거에 유효하게 답변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4 C.F.R § 106.45(b)(5)(vi).)
 - a. 내과의, 정신과의 또는 심리상담의에 의해서나 (전문 또는 준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타 공인 전문인이나 준전문인이 당사자에 대한 치료 제공과 관련하여 작성하고 보존한 당사자의 기록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사용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FCS는 당사자의 기록에 접근하거나 이를 참작하거나 공개, 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06.45(b)(5)(i).)
- iv. 조사 보고서(106.45(b)(5)(vi-vii).)
- 1. 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 전에 FCS는 각 당사자와 당사자 자문인에게(있는 경우)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할 증거와 초안 조사 보고서를 보냅니다. FCS는 전자 양식 또는 출력된 사본으로 이러한 자료를 선별해서 보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제공에는 다운로드, 인쇄 또는 전달을 방지하는 데이터 보호 안전장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0304 의 85 Fed. Reg. 참조)

2.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서면 답변을 제출할 기간이 달력 날짜로 10일 주어지게 됩니다.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 전에 이러한 답변을 참고할 것입니다.
3. 그런 다음 조사관은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하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조사 보고서는 Title IX 위반 발생 여부나 잠재적 제재에 대해 그 어떤 권고도 하지 않습니다. FCS는 조사 보고서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자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인의 검토 및 서면 답변을 위해 당사자의 자문인에게도 이를 송부할 것입니다.
4. 최종 조사 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된 이후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 반드시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최종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아야만 결정권자가 당사자의 답변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경우 조사관은 당사자의 답변을 참작하기 위해 조사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조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해당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제공됩니다.

v. 임의 기각

1. 다음은 조사 또는 심리 중 언제든지 FCS가 정식 고소 또는 제기된 혐의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a. 원고가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정식 고소 또는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취하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 b. 피고가 현재 학교에 등록 또는 고용된 상태가 아닙니다.
 - c. 또는 특정한 상황에 의해 FCS가 정식 고소 또는 혐의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34 C.F.R § 106.45(b)(3)(ii).)
2. 어떠한 상황이라도 지원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3. 첫 번째 상황에서 Title IX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재량으로 정식 고소에 서명하여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계속되도록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IV.A.iii~iv절을 참고하십시오.
4. 두 번째 상황에서:
 - a. 피고의 학생 또는 직원 기록에는 징계 절차(FCS로 당사자가 복귀하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해당 당사자가 떠났다는 점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혐의가 제기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거나 추정되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 b.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지원 조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고는 FCS가 관리하거나 소유한 건물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FCS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 이 절의 임의 기각이 인정되는 경우, 정식 고충 처리 절차는 중단됩니다.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Title IX 규정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며 피고에게 징벌적 제재 또는 조치도 행해질 수 없습니다. IV.A.ii절을 참조하십시오. (34 C.F.R. § 106.44(a); 34 C.F.R. § 106.45(b)(1)(i); 34 C.F.R. § 106.8(c) 인용.)

6. 이 절에 의거한 임의 기각은 **34 C.F.R §106.30** '성적 괴롭힘' II절에 있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범위 요건을 충족 미달인 **IV.A.vi.절** 하의 혐의 행위에 대한 필수 기각과는 다릅니다

E. 판결

- i. **FCS**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증거의 우세성 기준을 기반으로 **Title IX** 위반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 한 명 이상 앞에서 서면 결정 과정으로 종결됩니다. 결정권자가 피고가 혐의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입증 책임이 충족되었고 피고는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 ii. 고충 처리 절차가 끝나고 책임에 관한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피고는 혐의가 제기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추정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 iii. 피고가 **Title IX**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피고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C.F.R § 106.45(b)(6)(i).**)
- iv. **FCS**는 결정 과정에 대한 서면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FERPA**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은 기록을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v. 결정권자는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선택하며 피고의 등록 또는 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 직원 사례는 일반적으로 최고 인사 담당 책임자 또는 피지명자가 결정을 내립니다.
 2. 피고 학생 사례 일반적으로 구역 감독관 또는 피지명자가 판결을 내립니다. 결정권자는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조사관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 vi. **Title IX** 코디네이터는 당사자들에게 결정 과정이 시작되기 평일로 **3일** 전에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각 당사자는 이해 상충 관계 또는 편향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지명된 결정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결정 과정이 시작되기 최소 하루 전에 그러한 확신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는 이의가 제기된 결정권자를 유지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단독 재량이 있습니다. 교체된다면 결정권자 고려를 위해 결정 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vii. 증거
 1. 결정 과정 동안 모든 관련 증거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는 쟁점이 되는 혐의를 더욱 또는 덜 진실이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입니다(유죄 및 무죄 증명 증거). 원고, 피고 또는 증인으로서의 개인의 신분은 신빙성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4 C.F.R § 106.45(b)(1)(ii).**) 증거는 조사 과정 동안 수집한 증거와 다음 단락의 서면 질의를 주고 받으며 확보한 증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2. 결정권자는 각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묻고 싶은 관련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 당사자에게 답변을 하고, 또한 각 당사자로부터의 제한된 추가 후속 질문을 허용할 것입니다.
3. 질문을 제시하는 당사자에게 결정권자는 관련없는 질문을 배제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4. Title IX 규정 34 C.F.R. § 106.45(b)(6)(i)에 따라 원고의 성적 성향 또는 이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질문 및 증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혐의가 제기된 행위를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경우' 또는
 - b. '질문 및 증거가 피고와 관련된 원고의 이전 성적 행위의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이고 동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경우.'

viii. 책임에 관한 결정

1. 결정권자는 증거 검토 후 결정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발행합니다.
2. 증거의 우세성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권자는 혐의가 제기된 행위에 연루된 피고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며, 그렇다고 결정되는 경우에 적합한 징계 처분도 결정합니다.
3. 서면 결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 a. 34 C.F.R § 106.30에서 정의된 성적 괴롭힘으로 잠재적으로 여겨지는 혐의의 확인.
 - b. 현장 방문, 증거 수집에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정식 고소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절차 단계 설명.
 - c. 결정을 뒷받침하는 진상규명 내용.
 - d. 사실에 대한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적용에 관한 결론.
 - e. 각 혐의의 결과에 대한 근거 및 서술에 포함되는 내용:
 - i. 책임에 관한 결정.
 - ii. 결정권자가 피고에게 내리는 모든 징벌적 제재 그리고,
 - iii. FC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구제 방안이 원고에게 제공됩니다.
 - f. 결정에 항소하는 당사자를 위한 절차 및 허용 원칙.
(34 C.F.R § 106.45(b)(7)(ii).)
4. 당사자들은 서면 결정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5. 또한, 서면 결정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FC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의 회복과 보존을 위해 고안된 지원 조치가 원고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정서에서 피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구제 방안 및 지원 조치가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정은 '원고에게 구제 방안이 제공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85 Fed. 30425에 등록.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는 모든 구제 방안과 지원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34 C.F.R § 106.45(b)(7)(iv).)

ix. 제재 및 구제 방안 범위(34 C.F.R § 106.45(b)(1)(vi))

1. 피고 학생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구제 방안 범위입니다:

- a. 결정권자가 결정한 특정 기간 동안 방과 후 학교에 남기/토요일 등교
- b. 결정권자가 결정한 특정 기간 동안 교내 정학
- c.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하루에서 영구 퇴학까지 될 수 있는 특정 기간의 정학 처분/퇴학(결정권자는 수업 일로 11일 이상의 정학 처분에 대해 PEAK 같은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GBKL 정책에 따라 수습사원인 피고 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구제 방안의 범위입니다:

- a. 고용 종료.
- b. 근무일로 60일이 넘지 않는 기간의 무급 정직, 그리고
- c. 감독관으로부터의 견책 서한 발행 권고.

3. GBKL 정책에 따라 명확한 기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종신 재직권을 얻은 피고 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구제 방안의 범위입니다:

- a. 교사, 행정직 또는 기타 학교 직원 계약 종료 권고.
- b. 교사, 행정직 또는 기타 학교 직원의 근무일로 60일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무급 정직 권고.
- c. 교사, 행정직, 또는 기타 학교 직원 계약 무연장 권고.
- d. 1995년 4월 7일이나 그 전에 행정직으로서 종신 재직권을 얻은 행정직 또는 종신 재직권을 가진 교사의 계약 기간 동안 좌천 권고. e. 1995년 4월 7일이나 그 이전 행정직으로서 종신 재직권을 얻지 못한 행정직에 대한 다음 계약 년의 좌천. 그리고
- f. 감독관으로부터의 견책 서한 발행 권고.

4. GBKL 정책에 따라 명확한 기간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종신 재직권은 없는 피고 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구제 방안의 범위입니다:

- a. 교사, 행정직 또는 기타 학교 직원 계약 종료 권고.
- b. 교사, 행정직 또는 기타 학교 직원의 근무일로 60일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무급 정직 권고.
- c. 교사, 행정직, 또는 기타 학교 직원 계약 무연장.
- d. 종신 재직권이 없는 교사, 행정직 또는 다른 직원의 계약 기간 동안 좌천 권고.
- e. 종신 재직권이 없는 교사, 행정직 또는 다른 직원의 다음 계약 년의 좌천
- f. 감독관으로부터의 견책 서한 발행 권고.

5. 고용인으로 분류되는 피고 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구제 방안의 범위입니다:

- a. 결정권자가 결정한 특정 기간의 동안 무급 정직
- b. 좌천.
- c. 고용 종료, 그리고
- d. 감독관으로부터의 견책 서한 발행 권고.

6. 기타 피고 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구제 방안의 범위입니다:

- a. 결정권자가 결정한 특정 기간동안 유무급 정직.
- b. 좌천.
- c. 감독관으로부터의 견책 서한 발행 권고. 그리고
- d. 고용 종료.

7. 고충 처리 절차는 행정 회의, 상담, 회복 실행, 우려 편지, 지시 편지 발송, 전문적 학습 요구, 시정 조치 집행 및/또는 전문적인 개발 계획, 조지아 전문 표준위원회에 위탁, 법집행 기관에 위탁 및/또는 아동 보호 기관에 위탁 같은 비징계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FCS의 역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완전한 목록입니다.

x. 최종성

책임에 관한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경우:

- 1. 항소 제기시는 FCS가 해당 당사자들에게 항소 결정에 대한 서면 판결을 제공한 날짜에 해당되거나,
- 2. 항소 미제기시는 항소가 더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날짜에 해당됩니다. (34 C.F.R § 106.45(b)(7)(iii).)

E. 기간.

- i. FCS는 책임 서면 결정을 정식 고소가 제기 또는 서명된 날짜에서 120일 안에 발행하고자 합니다.
- ii. FCS는 이 절차의 일시적인 지연 또는 연장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자문인 또는 증인의 부재, 동시 법 집행 활동, 또는 언어 지원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필요등에 대한 참작 요소가 타당한 이유에 포함됩니다. 이는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 iii. 기간이 연장되면 FCS는 당사자들에게 지연이나 연장 및 지연이나 연장의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G. 피고 학생이 연루된 사안의 항소 절차

- i. 양쪽 당사자가 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정식 고소나 제기된 혐의에 대한 기각에 불복하는 항소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준 절차 위반.
 - 2. 책임 판결 또는 기각이 결정되었을 때 항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 가능하지 않았던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 3. 원고나 피고 개인 또는 피고들이나 원고들에 대해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또는 결정권자 사이에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 상충 관계나 편향성이 있을 때.
 - 4. 부적절한 징계인 경우: 심하게 가혹하거나, 심하게 관대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부정한 징계
 - 5. FCS는 재량에 따라 추가 사유로 양쪽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항소를 제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4 C.F.R § 106.45(b)(8)(i-ii).)
- ii. 항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결정서가 해당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날짜로부터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주말 포함. 다만 휴일이라 FCS가 문을 닫는 날들은 제외)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반드시 항소 사유를 명시하고 항소 당사자의 이름을 포함하며 항소 당사자가 이를 제출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문에는 항소 사유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결정, 조사, 또는 기각 시기나 그 이전에 항소 당사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면 항소에 반드시 그러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항소 제기의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소한 절차 변경을 확인 및/또는 보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iii. 항소를 접수하면 FCS는
 - 1. 항소 제기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양쪽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항소 절차를 이행합니다.
 - 2. 항소 결정권자를 책임 판결 또는 기각에 대해 일차 판결을 한 결정권자 또는 해당 조사관이나 기존의 Title IX 코디네이터와 다른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3. 항소 결정권자가 원고나 피고 개인 또는 원고들이나 피고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 상충 관계 또는 편향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결정권자가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4.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권자의 결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합당하고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106.45(b)(8)(iii).)
- iv. FCS는 항소 사본을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는 초기 결정에 대한 확정을 청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 및/또는 항소문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CS가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항소 사본을 제공한 날짜로부터 달력 날짜로 5일 안에(주말 포함. 다만 휴일이라 FCS가 문을 닫는 날들은 제외) 상기 서면 진술서가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 v.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 기한으로부터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휴일이라 FCS가 문을 닫는 날들과 주말 제외) FCS는 직접 출두 심리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 출두 심리에서는 각 당사자가 항소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구두로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심리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을 꺼린다면 항소를 처리하는 결정권자는 해당 당사자의 서면 제출서에 의존해야 합니다. FCS는 재량에 입각하고 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참여자들이 동시에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상 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vi. Title IX 코디네이터는 항소 신청 최종 기한 전과 항소 해결 전에 해당 제재 또는 지원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류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 vii. 항소는 기존 기록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서면 항소 제출과 항소 심리에서의 구두 진술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 viii. 기록 종결(모든 항소 자료 수령 또는 심리 이후) 후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 항소 결정권자는 항소의 결과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서면 결정 통지를 발행합니다. 위의 IV.F절에 서술된 바와 같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결정권자가 항소문에서 주장된 근거에 대하여 오류를 범하였는지 여부가 판결됩니다.
 - ix. 항소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106.45(b)(8)(iii)(E- F).)
 - x. Title IX에 따라 더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Title IX 항소 처리 결정이 최소 11일의 정학 처분/퇴학 및/ 또는 PEAK 같은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징계 제재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징계 제재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OCGA 20-2-754(c)에 따라 제재에 대한 항소를 풀턴 교육 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H. 피고 직원이 연루된 사안의 항소 절차

- i. 양쪽 당사자가 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정식 고소나 혐의에 대한 기각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준 절차 위반.

2. 책임 판결 또는 기각이 결정되었을 때 항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 가능하지 않았던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새로운 증거가 있을때.
 3. 원고나 피고 개인 또는 피고들이나 원고들에 대해 Title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또는 결정권자 사이에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 상충 관계나 편향성이 있을때.
 4. FCS는 재량에 따라 추가 이유로 양쪽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항소를 제안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4 C.F.R § 106.45(b)(8)(i-ii).)
- ii. 항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결정서가 해당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날짜로부터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주말 포함. 다만 휴일이라 FCS가 문을 닫는 날들은 제외)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항소장은 반드시 항소 사유를 명시하고 항소 당사자의 이름을 포함하며 항소 당사자가 이를 제출했다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문에는 항소 사유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결정, 조사, 또는 기각 시기나 그 이전에 항소 당사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면 항소에 반드시 그러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는 항소 제기의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소한 절차 변경을 확인 및/또는 보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iii. 항소를 받은 후 FCS는
1. 항소 제기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항소 절차를 양쪽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항소 결정권자를 책임 판결 또는 기각에 대해 일차 판결을 한 결정권자 또는 해당 조사관이나 Title IX 코디네이터와 다른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3. 항소 결정권자가 원고나 피고 개인 또는 원고들이나 피고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 상충 관계 또는 편향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결정권자가 필요한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합니다.
 4.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권자의 결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합당하고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34 C.F.R § 106.45(b)(8)(iii).)
- iv. FCS는 항소 사본을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는 초기 결정에 대한 확정을 청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 및/또는 항소문에 대한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CS가 항소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항소 사본을 제공한 날짜로부터 달력 날짜로 5일 안에(주말 포함. 다만 휴일이라 FCS가 문을 닫는 날들은 제외) 상기 서면 진술서가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 v. Title IX 코디네이터는 항소 신청 최종 기한 전과 항소 해결 전에 해당 제재 또는 지원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류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 vi. 항소는 기존 기록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서면 항소 제출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 vii. 기록 종결(모든 항소 자료 수령 또는 심리 이후) 후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 항소 결정권자는 항소의 결과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서면 결정 통지를 발행합니다. 위의 IV.F절에 서술된 바와 같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결정권자가 항소문에서 주장된 근거에 대하여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가 판결됩니다.
- viii. 항소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34 C.F.R § 106.45(b)(8)(iii)(E-F).)
- ix. Title IX에 따라 더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해당 정책에 의한 공정 해고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추가 절차는 오로지 해당 공정 해고법 및 정책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I. 비공식적 해결

- i. 책임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 언제라도 FCS는 전면적인 조사와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 중재 같은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고소가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FCS가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는 반드시 비공식적 해결 절차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중단됩니다. 각 당사자는 비공식적 해결에 도달하기 전에 언제나 비공식적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고충 처리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FCS는 당사자들의 비공식적 해결 절차 참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그들의 권리 포기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34 C.F.R § 106.45(b)(9).) FCS는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합리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진행할 것이나, 이 기간은 위의 IV.F절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ii. FCS는 직원이 학생을 성적으로 괴롭게 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제공하거나 진행하지 않습니다. (34 C.F.R § 106.45)(b)(9)(iii).)
- iii. 비공식적 해결 절차 진행 전 FCS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래 사항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로 제공합니다:
 - a. 해당 혐의.
 - b. 동일한 혐의가 원인이 되는 정식 고소를 당사자들이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해결 절차의 요건.
 - c. 비공식적 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당사자 중 누구든 언제라도 비공식적 해결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고충 처리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사실.
 - d. 보존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 기록을 포함하여 비공식적 해결 절차 참여로 발생하는 결과.
 - 2. 해당 당사자들의 비공식적 해결 절차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34 C.F.R § 106.45)(b)(9)(i-ii).)
- iv. 해당 당사자들이 비공식적 해결에 동의하면 정식 고소는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식 고충 처리 절차는 종료됩니다. 비공식적 해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새로운 공식 고충 처리 절차의 개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공식 고충 처리 절차를 되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V. 보복(34 C.F.R. § 106.71.)

- A. 34 C.F.R. § 106.71에서 제시된 것처럼, Title IX의 규정 또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보증하는 권리나 특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어떤 개인이 조사 또는 소송 절차에 신고 또는 고소, 증언을 했거나 조력을 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거나 참여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협박, 위협, 강압,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Title IX 또는 공식 고충 처리 절차가 보증하는 권리나 특전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차별 또는 성적 괴롭힘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성차별 신고나 고소 또는 성적 괴롭힘 신고나 정식 고소의 동일한 사실이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행동 규정 위반으로 개인을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는 협박, 위협, 강압 또는 차별은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 B. 'FCS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정식 고소를 한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성차별에 대한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 원고, 성차별 가해자라고 신고된 개인, 피고, 증인 모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다만, FERPA 법령, 20 U.S.C. 1232g 또는 FERPA 규정, 34 CFR 파트 99가 허용하는 경우나,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조사 행위, 심리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법 소송 절차를 포함하여 34 CFR 파트 106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C.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는 보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D. 성적 위법 행위 고충 절차 중에 악의적으로 심각한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개인을 행동 수치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보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에 관한 결정만으로는 어떤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심각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E. 보복 혐의를 제기하는 고소는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접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행동 수칙이나 해당 FCS고용 정책 및 절차에 의거한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다른 FCS Title IX 코디네이터에게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가 공식 고충 처리 절차 또는 해당 FCS 고용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고충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보복 혐의가 제기된 Title IX 코디네이터는 그 어떠한 고소의 조사나 판결도 관장하지 않게 됩니다.